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62
----------	-------

발의연월일 : 2026. 3. 20.

발 의 자 : 허성무·김종민·오세희
전종덕·김정호·박선원
김동아·조인철·서미화
전진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식품 등의 포장지 뒷면이나 측면에 열량, 당류, 포화지방 등의 수치를 표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영양표시 방법은 복잡한 표기 방식으로 인해 고령층이나 어린이의 경우 식품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식품 등에 대하여는 영양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5조의2”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영양등급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가 건강한 식품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대하여 식품등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성분등을 평가하여 영양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영양등급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양등급의 지정을 받은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영양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영양등급의 표시가 없거나 제3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5조”를 “제5조, 제5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 중 “제5조부터”를 “제5조, 제5조의2, 제6조부터”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3항, 제5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5조제3항”을 각각 “제5조제3항, 제5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등급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양등급 지정을 받은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영양표시) ① 식품등(기구 및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이하 <u>이 조</u>에서 같다)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영양표시를 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u><신 설></u></p>	<p>제5조(영양표시) ① ----- ----- <u>이 조 및 제5조의2</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u>제5조의2(영양등급 지정 등) ①</u>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가 건강한 식품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대하여 식품등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성분 등을 평가하여 영양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u></p> <p><u>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영양등급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u></p> <p><u>③ 제1항에 따른 영양등급의 지정을 받은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u></p>

② (생략)

③ 자율심의기구는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④ ~ ⑧ (생략)

제14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 ~ 4. (생략)

제16조(영업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부터-----

-----.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시정명령) -----

-----.

1. -----제5조제3항, 제5
조의2제4항-----

2. ~ 4. (현행과 같음)

제16조(영업정지 등) ①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 6. (생략)

② (생략)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

1. -----제5조제3항, 제5조의2제4항-----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제5조제3항, 제5조의2제4항-----

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 6. (생략)

④·⑤ (생략)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설>

2.·3. (생략)

②·③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